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4 . . . (제 회)	

세계무역기구협정등에의한
양허관세규정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제출연월일	24 .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획재정부장관이 우리나라 상황에 맞게 품목을 세분하여 정하는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가 2025년 1월 1일부터 개정·시행되는바, 통관(通關)상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양허관세가 적용되는 물품의 품목번호 및 품명을 달라진 품목분류기준에 맞게 수정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농림축산식품부 및 산업통상자원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입법예고(2024. 11. 13. ~ 12. 16.)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대통령령 제 호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 일부개정령안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가, 별표 1의 나, 별표 3의 가, 별표 3의 다, 별표 3의 라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양허관세 등이 적용되는 물품의 품목번호 및 품명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가, 별표 1의 나, 별표 3의 가, 별표 3의 다, 별표 3의 라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기획재정부 관세협력과 기획재정부 다자관세팀	
연 락 처	(044) 215 - 4453 (044) 215 - 4461